

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85
--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07년 11월 30일
제 안 자 :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2007. 5.11) 및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전부개정(2007.10. 4)에 따라 관련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규 조문번호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관계법규 인용조문 변경
 - 「지방자치법」 제36조를 제41조로 변경함(안 제1조)

3. 개정조례안 : 별첨

4. 신 · 구조문대비표 : 별첨

5. 관계법령발췌 : 별첨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

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36조”를 “제41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6조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인 감정인 및 참고인(이하 "중인 등"이라 한다)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제41조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

관계 법령 발췌

□ 「지방자치법」

- 제41조(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) ①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·도에서는 10일의 범위에서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7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- ②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,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.
- ③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·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·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·도의회와 시·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회와 시·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④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- ⑤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, 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.
- ⑥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7조를 따른다.
- ⑦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제4항과 제5항의 선서·증언·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「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